

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

Q 회사에서는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와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정산(한도있음), 소액경비와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 (영수증 미첨부)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의 출장비 등과 관련된 경비 지급시에는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 하되 증빙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통제 등의 이유 등으로 증빙없이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 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사회통념상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Q.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범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ex. 10만원 이하 수준의 비용지급 등)

Q. 직원의 출장명목의 비용집행 시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를 지급할 경우 증빙불비 등의 가산세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A 1. 회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사회통념상 범위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형 라이선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

Q 당사는 현재 개발을 위하여 무형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3년이상 사용

-500만원 이상

-소유권은 공급자한테 있음

-처음 구입 하고 기간에 따라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비용이 기간 마다 발생 하지만 이를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EX: 구입비 : 2천만원 , 유지보수 비 2년에 300만원)

위의 경우에 무형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처음 구입비는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
요? 아니면 모두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유권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 기간과 금액이 클 경우 상각해도 되는 지 궁
금합니다.

A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
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통상 소유권이 없으면 귀사가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
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Q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산-부채) - 자본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자본조정 중 부가
계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이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차감할 미실현이익 중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가감하는데, 이때 이연법인세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가감하
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식선택권

Q

비상장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데 2월에 발생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에 한번더 발생할 경우 발생분에 대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2월에 받은
평가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의 발생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월 발행분에 대해 5월평가금
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